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김 동 완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I. 머리말

지방자치의 연륜이 쌓여 가면서 자치행정의 환경적 요건의 주요 변수인 공무원의 행태, 주민의 욕구, 사회단체의 행정참여 등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발전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와 발전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주민참여는 주로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이 낸 세금을 선량히 관리하여야 하는 『공공회계책임의 실현』과 지역살림을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꾸려나가는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및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지방재정 살림살이를 이해·공감할 수 있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말하면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인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의 증진,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복지향상 등 공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배분·집행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이 낭비없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서는 재정관리제도의 확립과 지방공무원의 긴축·절약하는 예산의 집행 못지 않게 예산편성과 집행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공개와 투명한 운영은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대한 재정정보중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하느냐의 결정은 정보공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관건으로 이러한 재정정보공개의 일련과정은 지방재정의 제반사항을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검진하도록 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의 잘못된 내용을 처방하고 환류(Feed back)하는 인체의 건강검진과 같은 기능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II.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제도적 기반

공·사행정을 불문하고 업무의 제반영역에 정보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다량의 자료가 집적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시대에 지방재정분야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관계전문가 등과의 지방재정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공동 이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근저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제도의 정비가 동기가 된바 있으며 따라서 지방재정정보공개 제도도 이러한 틀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공개의 운영 형태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있어 정보의 성격상 비밀의 유지 등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보호하면서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제반시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96. 12월 제정된 바 있다.

동법에 의하면 정보공개 대상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청구공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청구없이도 공개하는 『정보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구공개의 대상 및 공개여부의 결정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 당해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기관별로 자체 결정 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혀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동법 제4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의 기본원칙과 내용을 자치입법을 통하여 자체 실정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재정관련사항의 공개

지방재정공개의 의미를 주민의 이해와 참여 및 협조를 통한 재정민주화의 실현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인식할 때 제반재정활동의 고사·공고 등의 방법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법적인 규정은 예산의결내용의 고시(지방자치법 제124조), 결산결과 고시(지방자치법 제125조), 재정운영상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주민공개대상범위>

2월 공개대상	7월 공개대상
·지방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상황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당해연도 공유재산·주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운영상황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전연도의 결산개황 ·전연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연도 주민부담상황 ·전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전연도 공유재산·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연도 지방공기업 운영상황 ·기타 지방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황의 공개(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재정정보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관련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개내용의 범위와 폭이 확대되고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공개는 『청구공개』 보다는 『정보제공』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의 통제가 주민의 손에 맡겨 질 때 더욱 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주민의 알권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Ⅲ. 지방재정공개의 실태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유형중 공개청구의 내용과 양태는 시민의 관심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지방재정 정보공개 요구의 주요관심이 되고

있는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이는 접대비 등으로 사용되어 경비의 성격과 용도가 포괄적이며 경비의 지출이 불가피하면서도 잘못 집행하면 소모적·낭비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99. 11. 25.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필두로 공개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단체에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하여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의견을 달리한 자치단체에서 소송을 통하여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집행대상의 정보중 사인(私人)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필요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공개하도록 판결('01. 5. 8. 서울고법판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공포('00. 10. 25)한 바 있으며 예산결산, 부문별 중장기계획, 연도별 업무계획 등 기본적인 시정

운영관련사항을 시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IV.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지방재정정보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청

구공개』 측면에서 보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공급의 원칙에 의거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개의 내용이 공개의 청구요구에 의거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재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보다는 주민의 요구에 수동적 입장에서 공개에 임하게 되고 공개의 내용도 요구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되며, 공개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한 사항

-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 이용자도 특정적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정보공개 목적의 지방재정의 살림살이를 알려주고 이를 이해하도록 하며 나아가 주민의 재정활동에 참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청구가 없이도 중요한 재정정보는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제공』 측면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보의 내용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개의 대상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개의 여부는 기관별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및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범위는 정보내용이 비밀에 속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행정내부의 검토사항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활동은 개별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가 동일하고 재정운영에 관한 절차와 내용이 동일한 법규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별자치단체별로의 특성있는 재정정보공개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상대비교를 위한 정보공개의 통일화표준화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이와같이 정보공개의 통일화표준화에 중요성을 두는 경우 지역적·특화된 정보를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정보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는 어느때든지 정보를 생성한 기관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제도상 통일적·표준적인 정보공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적 특화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적극 알려주는 상호 조화있는 공개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통일화표준화하는 경우 업무의 여건상 자연스럽게 광역 또는 중앙단위에서 공개업무를 지원할 수 밖에 없게 되며, 예로 전국단위 지방재정정보는 기능상 개별자치단체에서 제공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에서는 개별자치단체의 재정정보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등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등에게 공고·고시할 의무가 있고 기 공개된 자료의 범위내에서 이를 통일화표준화하여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통일화표준화된 지방재정 정보공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지방재정 정보공개와 지방재정 관리기능이 연계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단순히 지방재정활동과정에서 이뤄진 사실과 발생한 내용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정책결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는 지방재정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중기재정계획제도, 투·융자심사제도 등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준수여부 등의 공개와 재정정책수립 등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보공개내용의 객관화와 상호 비교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지방재정활동의 내용은 사회적 공공적 활동이므로 절대적 기준에 의거 평가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사한 자치단체 간 재정활동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재정정보의 공개는 무엇보다 통일성이 유지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의거 작성되지 않은 정보는 상호 비교할 수 없는 불완전성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분석의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공된 정보가 협소하고 함축하는 의미가 없는 정보의 경우 정보이용자의 활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지방예산 규모의 정보제공시 이에 부수되는 주변정보 즉 예산규모를 공개할 경우 총계예산·순계예산·회계별 예산규모를 동시에 공개하여 이용자가 활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하게 분석·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4) 정례적이며 계속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정보의 대부분은 연도간의 변동추세를 파악하므로 활용도를 높힐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재정활동은 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연도간의 시계열적인 분석은 정보활용의 유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의 제공은 정보가 발생된 시기에 맞춰 정례적으로 공개하여 이러한 자료가 집적되어 감에 따라 재정정보의 질이 높아지고 활용여건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V. 지방재정 정보공개와 정보화

재정정보의 공개는 재정정보를 관리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의 생명인 신속성과 정확성의 확보는 재정정보화의 지원없이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재정정보화의 주요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 등 지방재정의 운영은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자치단체별로 재정정보의 공개는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재정정보의 단체간 비교 검증과 상호 호환이 어렵고 따라서 이를 통일적 기준에 의거 표준화된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소자치단체의 재정운영전산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는 네트워크의 구성과 예산편성 결과 등 재정관련 자료를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방예산통

<지방재정정보화 추진경과>

추진내용	추진실적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LBIS) 기본프로그램 개발	○ 지방예산통합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00. 8월) ○ 기본프로그램 개발('00. 9 ~ 12월) - 세입·세출현황 : 전국, 광역(16개 시·도), 기초(232개 시·군·구) - 재정지표 : 재정자립도 등 10개지표
○프로그램 시험 적용	○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작성('01. 1 ~ 2)
○LBIS시스템 보완	○ 시스템기능보완을 위한 Up Grade('01. 4 ~ 8) - 자료분석 서식 개발 - 출력시스템 개발 - 재정지표 분석프로그램 개발 · 주요 예산항목별 비중 및 주민1인당 지표 등
○지방재정공개프로그램개발 (LFOS)	○ LBIS의 DB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가능한 시스템 구축('01. 5 ~ 9) - 자료의 선별적 선택, 선택된 자료의 DB 구축
○지방예산현황 인터넷 공개	○ 인터넷 공개용 전용홈페이지 구축 및 공개('01. 9. 28) - 세입세출예산 총계 및 순계, 재정지표 등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와 연계
○지방결산통합정보시스템(LSIS)	○ 지방결산통합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01. 9월) ○ 프로그램 개발('01. 10 ~ '02. 2월) - 집행·결산보고 작업의 전산화 - 재정집행·결산현황, 재정지표분석 기능 등
○지방재정전용 홈페이지구축	○ 프로그램 개발('01. 10 ~ '02. 2월) ○ 재정정보의 지방재정정보자료의 창구 일원화 및 커뮤니티 형성

합정보시스템(LBIS : Local Budget Intergrated Information System)을 2001년도에 구축하여 2002년도부터 본격 활용하고 있으며, 지자체단체의 예산정보 자료를 표준화하여 전국단위·광역단위·개별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지방재정공개프로그램(LFOS : Local Finance Open System)을 2001. 10월 개

발하여 지방예산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방재정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화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재정정보 공개의 창구를 제도적으로 일원화

<인터넷 공개 항목>

공 개 항 목	공 개 내 용
○예산규모	자치단체별 세입·세출규모
○세입재원별 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국가지원재원, 지방채
○세출성질별 현황	경상예산(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자체사업, 보조사업), 채무상환, 예비비 등
○재정지표	재정자립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지방세부담액·세외수입액, 투자비·경상비 비중 등

하고 공개된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매개체로 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자치단체, 전문연구기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재정전용홈페이지를 개발(재정고)하여 2002. 8월부터 가동중에 있다

1) 지방 예산정보의 표준화 공개

지방예산정보화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책자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왔던 지방재정 정보를 전국 248개 개별자치단체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전국단위별로 합산·분석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내용으로는 지방세입재원별 내역(지방세, 세외수입, 국가지원재원, 지방채), 지방세출성질별 내역(경상경비,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지방예산 분석지표 내역(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지방세부담액 등) 등으로 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그동안 계속적으로 공개되어 왔던 내용을 표준적·통일적 형식을 통하여 공개한 것이다.

특히 공개방식의 특징은 단편적인 예산편성현황만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전문적인 재정지식 없이도 개별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분석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이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한단계 높아지고 자치단체간에도 다른 자치단체의 정보를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자치단체간 재정정보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건전재정운영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내용은 예산편성결과 정보에 국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전산화 진척정도에 따라 집행결산내용도 단계적으로 공개하여 주민들이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공개자료의 이용방법

지방재정정보는 지방재정전용홈페이지인 재정고(財政庫)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게시된 내용중『지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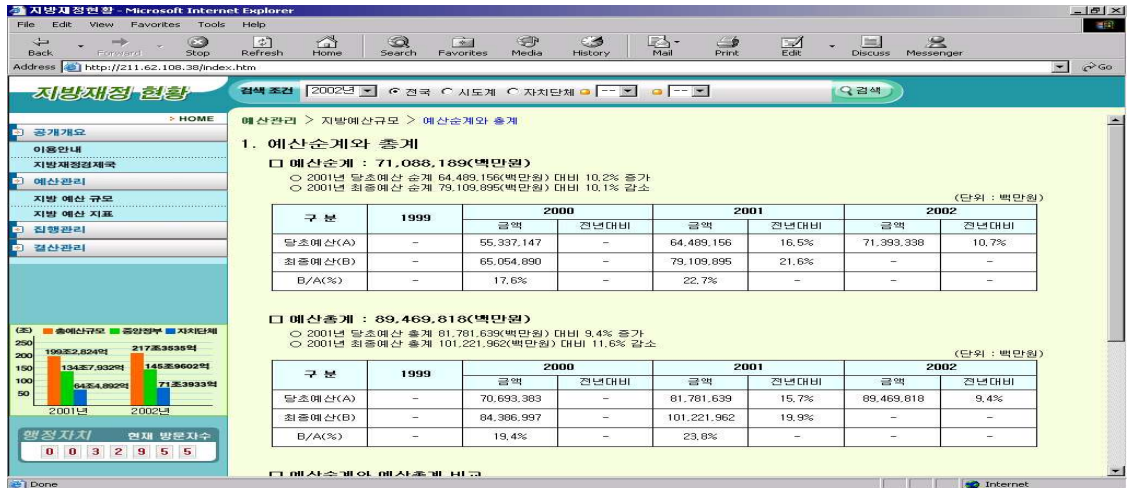
정(재정고)』를 클릭하면 공개된 정보에 연결된다. 초기화면 <그림1>에서는 조회하고자 하는 단체를 화면지도상에서 선택한 후 왼쪽 메뉴를 통하여 성질별로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반대로 예산 현황 및 지표 등 성질별 메뉴를 먼저 선택

한 후 시도별, 자치단체별로 선택하여도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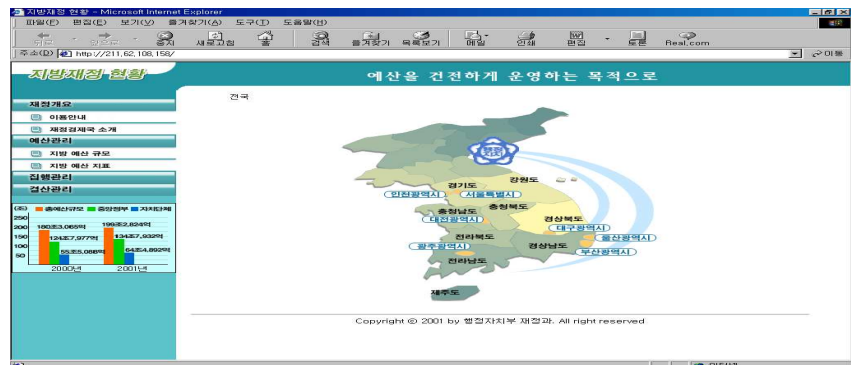
<그림 2>화면은 초기화면에서 서울특별시를 선택했을 때 본청 및 산하 자치단체의 예산 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것으로 이 기능은 서울특별시뿐만 아니

<공개 내용에 포함된 지방예산분석지표>

구 분	재 정 지 표	산 출 방 식
세 입	재정자립도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frac{\text{일반회계 자체수입}(\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인 구 수}}$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frac{\text{지방세액}}{\text{인 구 수}}$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frac{\text{일반회계 세외수입액}}{\text{인 구 수}}$
세 출	기본적세출소요 비중	$\frac{\text{경상예산} + \text{채무상환}}{\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투자비 비중	$\frac{\text{사업예산 총계규모}}{\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경상비 비중	$\frac{\text{경상예산}(\text{인건비} + \text{경상적경비})}{\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의회비 비중	$\frac{\text{의회비} + \text{의회사무처 경비}}{\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예비비 확보율	$\frac{\text{예 비 비}}{\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frac{\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text{인 구 수}}$
세입· 세출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frac{\text{인 건 비}}{\text{자체수입}(\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그림 1> 초기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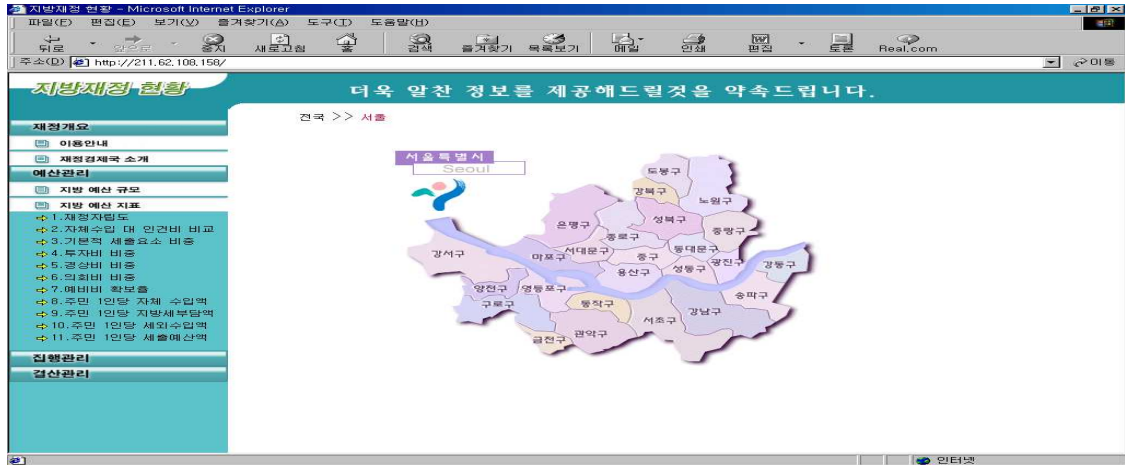


<그림 2> 광역단체 선택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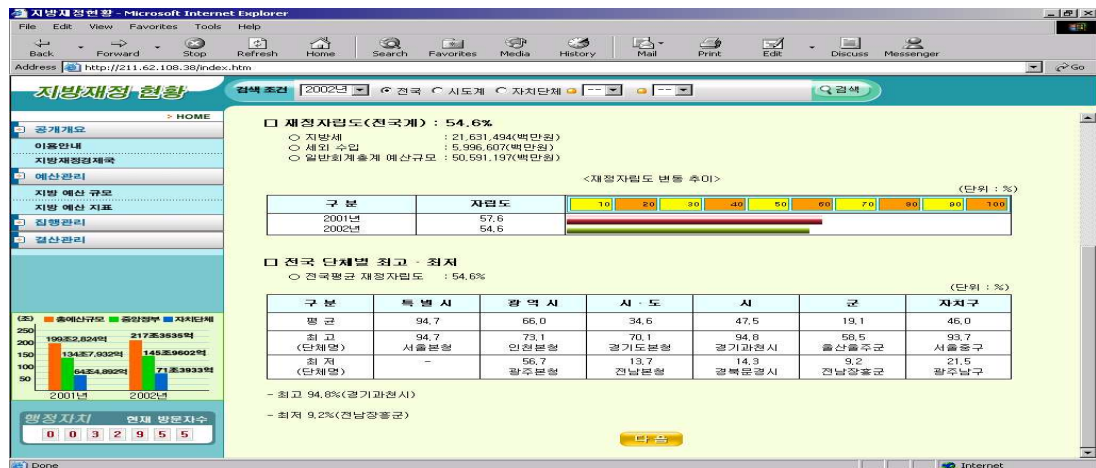
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DB화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그림 3〉화면은 지방예산순계와 총계규모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2002년도 지방예산 순계는 2001년도보다 당초예산 대비 10.7%가 증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화면은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지역주민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지표를 내역별로 구성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2002년도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그림 3> 예산규모와 총계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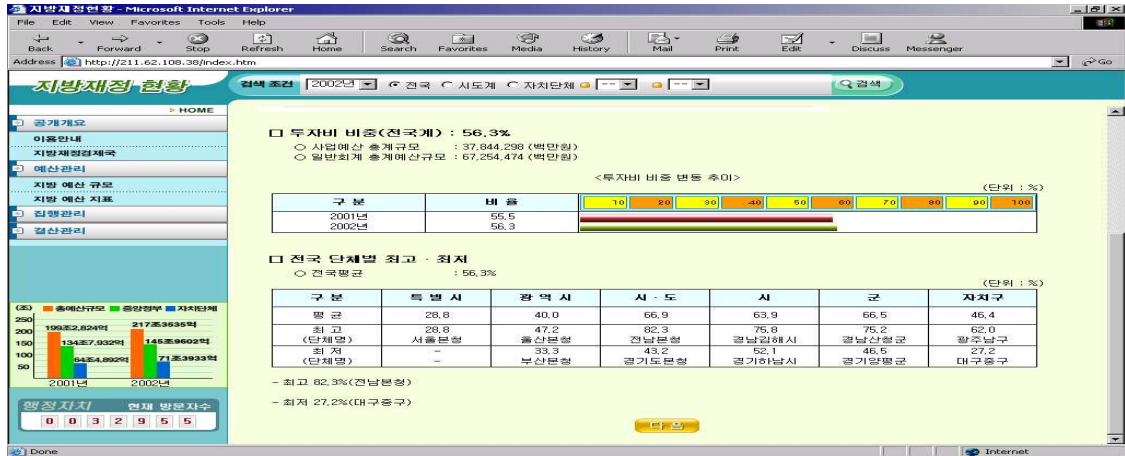
<그림 4> 지방재정지표자료

57.6%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개별자치 단체를 비교하여 최고·최저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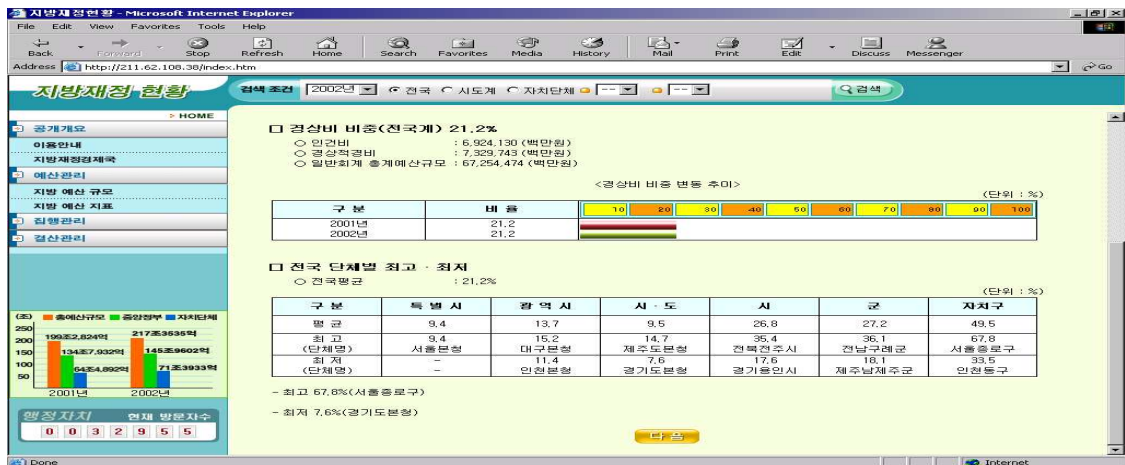
<그림 5> 화면은 세출예산중 투자비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에 배분되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SOC확충, 재해대책, 환경개선, 사회보장 등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개발

의 재정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성격의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개발에 투자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2002년도 투자비비중 전국평균은 56.3%로 2001년도의 55.5%보다 0.8%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화면은 세출예산중 경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비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인건비와 경상적



<그림 5> 투자비 정보자료



<그림 6> 경상예산정보자료

경비로 배분되는 경상비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검색방법에 의하여 전국 248개 자치단체별, 16개 광역단체별, 전국단위의 재정정보를 표준화·통일화된 방법에 의거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공개된 내용은 많으나 구체적

인 내용은 직접 접속하여 파악하여 주시기 바란다.

VI. 맺 음 말

지방재정 정보공개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정보공개의 주체에 대하여 개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행정자치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같은 주제 속에 다루고 있음은 글을 쓰면서도 다소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재정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양질의 재정정보공개는 개별 자치단체와 지방재정을 지도하는 중앙부처에 같이 부과된 의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여건이 날로 다양화·세분화 되어가는 환경속에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영은 어느 한기관의 전유물과 독립된 의무는 아닐 것이며 앞으로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공개내용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공개요구의 질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합하여 질 때 지역

주민의 신뢰와 참여 및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의 밝은 앞날은 재정정보의 투명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현재의 지방재정정보공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공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재정정보화사업의 중단없는 추진과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이루는 복식부기제도가 지방예산회계제도에 적용될 경우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여건은 한차원 높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